

의안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제정이유

-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주요골자

-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한다.
-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명목가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예: 주식선택권이 부여된 경우)되거나 발행(예: 주식이 부여된 경우)되기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부채는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복합금융상품 중 부채요소만을 인식할 수 있으며 부채요소는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사업부문별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행일 :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 경과조치 :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지 아니한 특례사항은 그 후의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와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구 분	기준서	현행 기업회계기준
형식	기준서(statement)식	법조문식
제정기관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의 범위	<p>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다만 다음의 기업은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없다.</p>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기업 (가) 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p> <p>(나)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p> <p>(2)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p> <p>(3)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포함된 경우의 지배회사</p>	상장법인 및 금융감독위원회등록 법인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음.	(신설)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의 평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감액손실에 대하여는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39를 준용함.	(신설)
지분법의 적용여부	지분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함.	(신설)

구 분	기준서	현행 기업회계기준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기전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음.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부채를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 ·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복합금융상품 중 부채요소만을 인식할 수 있으며, 부채요소는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 	(신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의 결정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음.	(신설)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2003. 12. 23.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3. 12. 23.

요 약

이 기준서는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의 기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 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연결채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한다.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명목가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할 수 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예: 주식선택권이 부여된 경우)되거나 발행(예: 주식이 부여된 경우)되기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부채는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복합금융상품 중 부채요소만을 인식할 수 있으며 부채요소는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사업부문별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내 용

	문단번호
목 적	1
적용범위	2 - 3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4 - 13
주식공시	14 - 19
시행일	20 - 21의 2
경과조치	22 - 25
부록1. 결론도출근거	A1 - A15의 4

목 적

1. 이 기준서는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의 기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기업은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없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기업

(가) 상장법인

(나)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3)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포함된 경우의 지배회사<2009. 2. 13. 개정>

3.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4.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5.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감액손실에 대하여는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39를 준용한다.
6.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한다.
7.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명목가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할 수 있다.
8.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예: 주식선택권이 부여된 경우)되거나 발행(예: 주식이 부여된 경우)되기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여한 주식선택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신주의 액면금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부채는 매 **보고**

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복합금융상품 중 부채요소만을 인식할 수 있으며 부채요소는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9.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0.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1.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이익을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2.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3. 손익계산서에서 주당이익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석공시

14. 사업부문별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어 특례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에 주석으로 기재한다. 그리고<2009. 2. 13. 개정> 문단4**

내지 15의 내용 중 회계처리, 재무제표표시 및 주식공시 과정에서 선택한 사항은 주식으로 기재한다.

17.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단4를 적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식으로 기재한다.

(가) 거래목적

(나) 거래목적에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경제적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의 본질 및 원천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제적 실체의 대응 정책 등)

(다)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계약수량, 약정환율 등)

18.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단 8을 적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식으로 기재한다.

(가)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각 유형에 대한 기술. 이 경우 가득조건,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만기, 결제방식(현금이나 주식) 등과 같은 조건을 각 유형별 기술에 포함한다.

(나) 다음 각각에 대한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 다음의 주식사항은 주가차액보상권(주식결제형 또는 현금결제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회계기간 초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

(2) 회계기간에 부여한 주식선택권

(3) 회계기간에 상실된 주식선택권

(4) 회계기간에 행사된 주식선택권

(5) 회계기간에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한 주식선택권

(6) 회계기간에 만기소멸된 주식선택권

(7) 회계기간 말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

(8) 회계기간 말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선택권

(다) 회계기간 말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범위와 가중평균 잔여만기. 행사가격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에는 주식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발행시기, 그리고 행사대금으로 유입되는 현금

흐름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수준으로 범위를 세분할 필요가 있다. 이 주식사항은 주가차액보상권(주식결제형 또는 현금결제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된 부채에 대한 다음의 정보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총장부금액

(2) 거래상대방이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 주가차액보상권)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가득한 경우 당해 권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총내재가치. 다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련 부채가 결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19. 문단13을 적용한 경우에는 주당이익에 대한 정보를 주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 이 기준서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게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21의 2. 이 기준서의 문단 2와 문단 16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게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의 문단 2와 문단 16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2009. 2. 13. 개정>

경과조치

22.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지 아니한 특례사항은 그 후의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22의 2. 문단 22에 불구하고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문단 4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파생상품평가손익에 관한 정보를 주식으로 공시한다.<2008. 11. 14. 신설>

22의 3.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제1항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한하여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를 2008년 6월 30일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 또는 부담한 부채는 제외한다. 이 경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아니하며, 외화환산에 대한 특례의 선택 여부, 환율 적용 시점 이후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환산손익 및 그러한 외화환산손익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금액적 영향을 주식으로 공시한다.<2008. 12. 30. 신설>

23. 문단4 내지 19를 적용하던 중소기업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상장 등 기업공개로 인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4.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에 의하여 대체된다.

(가) 기업회계기준 제89조(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나) 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36(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25. 이 기준서의 내용과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효한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6인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정기영(위원장), 김의형, 송인만, 신용인, 이창우, 최외홍

부록1. 결론도출근거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1.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¹⁾<2009. 2. 13. 개정>**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고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대체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정된 기준서 제1호 내지 제13호 중 제4호 “수익인식”만이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제정된 기준서의 모든 내용을 중소기업이 준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중소기업의 재무보고로 인하여 효익을 얻는 이해관계자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중 일부 내용을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2.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준서의 준거기준이 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서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형식 및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감사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02년 8월에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특례형식으로 제정하기로 하였다(문단1).

1) 2009년 2월 4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단 2의 적용범위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개정하였다.<2009. 2. 13. 개정>

- A3. 한국회계기준원의 조사연구실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보칙, 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과 설문조사 결과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안을 작성하였다. 기초안은 2002년 2월 7일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논의되어, 회계기준자문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회계학회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고 한국회계기준원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공개초안의 시안으로 확정되었다.
- A4. 회계기준위원회는 2003년 3월 21일에 조사연구실이 작성한 공개초안의 시안을 공개초안으로 확정하였다. 확정된 공개초안에 대하여 17개의 기업회계기준 의견조회기관과 한국회계기준원 웹사이트의 기업회계기준 소식을 통하여 공식적인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였고, 2003년 6월 24일까지 의견조회기관 등으로부터 4개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이를 검토·반영하여 2003년 12월 23일 최종기준서를 확정하였다.
- A5.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증권신고서 제출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2009. 2. 13. 개정>를 제외한 기업으로 하여,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최초에 기준서 제14호를 적용하였다가 그 후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이 다시 기준서 제14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으나 기준서 제14호의 취지인 중소기업의 회계처리부담 완화에 보다 더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A중소기업의 상황별 기준서 제14호의 적용여부는 다음과 같다.<2009. 2. 13. 개정>

A중소기업	20X1년	20X2년	20X3년	20X4년	20X5년	20X6년
-------	-------	-------	-------	-------	-------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가?	○	×	×	○	×	×
증권이 유통되고 있는가?	○	○	×	×	○	×
기준서 제14호 적용여부 ^(*)	×	×	○	×	×	○

(*) 상황별 기준서 제14호의 적용여부

· 20X1년: 당해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 20X2년: 이전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 20X3년: 당해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가능

· 20X4년: 당해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아직 발생되지 아니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불가

· 20X5년: 이전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 20X6년: 당해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가능

A중소기업은 20X3년에 기준서 제14호를 적용하였고 20X4년과 20X5년에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20X6년에 이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2009. 2. 13. 개정>(문단2).

A6.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그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완화하였다(문단4).

A7.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은 일반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가 어렵거나, 기업마다 성장성 등에 있어서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장가격과 직접 비교하여 공정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완화하였다(문단5).

A8.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피투자회사 결산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피투자회사가 중소기업인 관계로 조속한 결산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효익을 얻는 이해관계자가 적다고 판단하여 완화하였다(문단6).

A9.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 가득기간에 걸쳐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보상원가가 인식되지 아니하는 대신 자본의 증가도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부여된 지분상품(특히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준을 완화하였다. 한편,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부채 과소계상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시되므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같은 특례를 두지는 않았다. 다만 부채(예: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경우 기대주가변동성을 구하여야 하는 등 중소기업에게 많은 부담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상세한 주석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기준서의 문단 8을 적용할 경우 보상원가를 측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석사항은 중소기업에 대해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문단8).

A10. 1년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총도급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동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총공사비를 원가로 계상한다.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을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게 되어 자

산이 부적절하게 평가되고, 손익이 잘못 측정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외부의견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위원회는 고객에게 인도된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분리하여 할부재고자산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문단9).

A1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은 세무정책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 재무회계의 목적과는 상충될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 등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비교가능성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완화하였다(문단10).

A12. 이연법인세회계의 목적은 기업회계에서의 손익인식기준과 세무회계에서의 과세소득 산정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부담액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데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제공으로 인한 효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완화하였다. 이 경우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은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 등의 계정과목으로 각각 기재한다(문단12).

A13. 사업부문별 정보는 기업의 전체 영업활동을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기업의 성과에 대한 심층적 이해, 기업의 위험·이익 및 미래현금흐름 등에 대한 예측,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다양화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판단에 대한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시 도움을 주는 것이며,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정보는 회계정보이용자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성과와 중단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손익을 구분하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수익성 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은 정보이용자가 많지 않고, 사업부문의 구성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제공으로 인한 효익이 크지 않을 것

이라 판단하여 완화하였다(문단 14).

A14. 이 기준서가 요구하는 주식공시사항은 중소기업이 적용한 예외적인 회계처리 사항 및 보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문단16, 17 및 18).

A15. 이 기준서의 문단을 적용할 때 문단별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이 기간별로도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언급한 비교가능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외부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이 하나의 문단에 대하여 기간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성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계속성에 대한 문제는 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경과조치에서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지 아니한 특례사항은 그 후의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계속성을 준수하도록 하였다(문단22).

A15의 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관련 회계처리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문단 4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문단 22의 2를 신설하였다. 한편, 파생상품평가손익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문단4).<2008. 11. 14. 신설>

A15의 3. 2008년 하반기 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도 회계기준의 적용이 비교적 덜 엄격함을 감안하여 특정 일자(2008.6.30.) 이전부터 보유하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부채는 동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8. 12. 30. 신설>

A15의 4.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의 개정은 그 긴급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2008.12.26.)가 증권선물위원회(2008.12.24.)의 심의를 거쳐 기존 기업회계기준의 해당 부분을 별도의 외부의견수렴절차 없이 개정하도록 한국회계기준원에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졌다.<2008. 12. 30. 신설>